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7조의2(서류검사) 법 제33조제 5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<u>서류</u>”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<u>서류</u>를 말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그 밖에 <u>원산지</u>의 표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<u>서류</u></p>	<p>제57조의2(<u>자료조사</u>) ----- ----- ---- <u>자료</u>----- ---- <u>자료를</u>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문서화·전산화된 장부, 서류 등 관계 자료 또는 물품으로서 원산지</u>----- ----- <u>자료</u></p>
<p>제59조의2(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(이하 “과징금납부의무자”라 한다)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<u>1억원 이상</u>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59조의2(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1천만원 이상</u>----- ----- <u>거나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1. ~ 4. (생략)

② ~ ⑤ (생략)

제60조(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) ① (생략)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해당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 규모,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넘을 수 없다.

제66조(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등)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은 헌법에 따라 체결·공포된 조약이나 협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상대 수입국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으로 한다.

②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60조(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 횟수, 사업규모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) -----  
-----.  
-----  
-----.

제66조(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등) ① -----  
-- 따른 -----  
-----  
-----  
상대 -----  
----- 원산지판정기준 또는 법 제3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원산지 판정기준 -----  
-----.

② 원산지증명서 -----

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2. 수출 물품의 가격·수량 등에 관한 서류
3. 그 밖에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

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·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④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. 다만, 헌법에 따라 체결·공포된 조약이나 협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그 유효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으로 한다.

-----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-----

1. (현행과 같음)
2. 가격·수량-----

3. ----- 원산지-----

③-----

----- 후 -----

④-----

----- 1년 이내-----.

----- 협정-----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  
한 것 외에 수출 물품의 원산지  
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 
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  
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90조(수수료) 법 제37조에 따라  
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  
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  
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  
료를 내야 한다.

제91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~  
③ (생략)

④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 제  
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 
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한다.  
다만, 제6호의 권한 중 자유무  
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의 입  
주업체에 대한 권한은 자유무역  
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.

1. ~ 4. (생략)

4의2.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  
른 과징금 부과 및 이 영 제59  
조의2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  
한의 연장, 분할납부 및 그 결  
정의 취소에 관한 권한

⑤----- 제4항까지 -----  
----- 원산지증명서-----

제90조(수수료) -----  
원산지증명서-----

제91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~  
③ (현행과 같음)

④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4의2. -----  
----- 제59조의2-----

----- 권한, 제60조  
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가중

<p>5. ~ 7. (생략)</p> <p>⑤ (생략)</p> <p>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한다.</p> <p>1. 1의2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2. 3. (생략)</p> <p>⑦ ~ ⑫ (생략)</p>	<p><u>하거나 경감하는 권한</u></p> <p>5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1의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의3.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</u> <u>원산지표시의무 위반자 중 공</u> <u>표 대상자에 대해 공표하는</u> <u>권한</u>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~ ⑫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